

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부터 '20.12.31까지 1년 동안은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부칙규정으로 유예하였으나, 하향등검사장비의 개발·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1.1.부터 '21.8.31까지로 8개월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2.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8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리번호 물류-05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랩투마켓(장윤석)

나. 전화번호 : 02-3158-2094

2. 명칭 : 보관/하역작업을 자동 처리하고 모듈탈부착이 가능한 레고형 셔틀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보관, 하역

<기술의 요지>

화물보관랙 안에서 최대 50kg 미만의 상품 박스를 랙 보관, 박스 피킹 및 이송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고객 수요에 맞춰 기능 모듈 1, 2, 3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모듈형 시스템임

- 기능모듈 1(피킹모듈) : 랙의 상품박스를 반입/반출하는 기능 모듈
- 기능모듈 2(폭조절모듈) : 다양한 크기 상품박스에 따라 포킹부를 폭조절하는 기능 모듈
- 기능모듈 3(리프트모듈) : 공중에서 상품박스를 공급/회수작업을 위해 승하강 하는 기능 모듈

<범위>

최대 50kg 미만의 상품박스의 보관, 이송, 피킹 작업을 수행하는 보관/피킹(Picking) 자동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도용 등으로 침해한 경우
2. 신청기술등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법정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술등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자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능)으로 제출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4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 전문분야 확대, 예비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지정요건 명확화 및 법령정비, 인증관리시스템 규정 신설, 영문 인증서 마련 등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의 만료 180일 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년으로 함